

대 구 가 톨 릭 대 학 교
2018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일 시	2018. 1. 24.(수), 10:30 ~ 11:00		장 소	본관 412호 기획처장실	
위원수	8명	참석 위원수	6명	불참 위원수	2명
참 석	김대학(위원장), 박영봉, 조극래, 김영준, 안준용, 김주형				
불 참	강경래, 조병진		참관 인사	예산평가팀 허성보 (예산담당)	
안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2017학년도 학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2차 추경자금예산(안) 심의 ▣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(안) 심의 ▣ 사립학교법 제32조의2(적립금) 개정에 따른 임의기타적립금 변경 및 적립금 계정과목변경 심의 				
회 의 내 용	<p>위원장 : 성원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고, 참석 위원 소개를 함.</p> <p>위원장 : 2017학년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2차 추경자금예산(안), 2018학년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(안),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(적립금) 개정에 따른 임의기타적립금 변경 및 적립금 계정과목변경은 대학평의 원회의 자문을 받았음을 공지하고, 안건에 대하여 설명함.</p> <p>위원장 : 2018학년도 학부 수업료와 입학금 감소 총액은 약 25억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설명하고, 부득이하게 학과운영배정예산을 전년 대비 하여 10%인 약 1억 천만원을 삭감하였음을 설명함.</p> <p>위원장 : 2018학년도 본예산 중 연구학생경비가 많이 감소한 부분은 2017 학년도까지 수행되던 ACE사업이 종료되면서 ACE관련 학생경비가 감소하여 생긴 것임을 학생위원들에게 설명함.</p> <p>위원장 : 2018학년도 교내장학금은 219억 9천만원으로 어려운 재정상황 이지만 교내장학금 지급을 유지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학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함.</p> <p>박영봉위원 : 현재 우리학교의 경비용역은 현대TMS에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며 혹시 봄이 되어 청소여사님들이 인건비 협상을 위한 파업하 게 되면 인건비협상은 현대TMS와 해야하는 사항이므로 학교와는 상관 이 없음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함.</p>				

회
의
내
용

전 체 : 위원간 기타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,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, 2017학년도 학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2차 추경자금예산(안),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(안)은 정확하게 편성되었으며, 사립학교법 제32조의2(적립금) 개정에 따라 임의기타적립금이 적정하게 변경되었으며, 원금보전 적립금과 임의기금의 계정과목변경도 적정하게 변경되었음에 동의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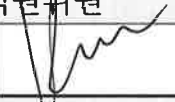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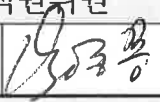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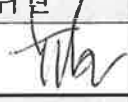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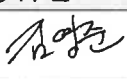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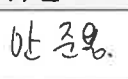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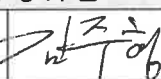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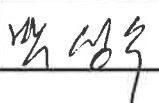
- ▶ 2017학년도 학교비회계 2차 추경자금예산(안) 총액은 2017학년도 1차 추경예산 대비 수입 및 지출이 각 3,637,041,000원이 증액된 179,732,223,000원으로 집계된 원안에 동의함.
- ▶ 2017학년도 부속병원회계 2차 추경자금예산(안) 총액은 2017학년도 1차 추경예산 대비 수입 및 지출이 각 3,000,000,000원이 증액된 335,651,758,000원으로 집계된 원안에 동의함.
- ▶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 총액은 2017학년도 1차 추경예산 대비 수입 및 지출이 각 2,977,987,000원이 증액된 179,073,169,000원으로 집계된 원안에 동의함.
- ▶ 2018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(안) 총액은 2017학년도 1차 추경예산 대비 수입 및 지출이 각 12,463,420,000원이 감액된 320,188,338,000원으로 집계된 원안에 동의함.
- ▶ 임의기타적립금이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정하게 변경되었으며, 원금보전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계정과목변경 또한 적정하게 변경되었음에 동의함.

전 체 : 금일 심의한 2017학년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2차 추경자금 예산(안), 2018학년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(안), 사립학교법 제32조의2(적립금) 개정에 따른 임의기타적립금 변경 및 적립금 계정과목변경은 원안대로 법인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.

위원장 : 등록금회계 잉여금 발생 시 처리 기준 원칙에 대해 설명함.

예산담당자 : 잉여금이란 본예산 편성 시점의 전기이월자금 추정치보다 실제 이월 금액이 많아 발생하는 차액을 의미함을 설명함.

회의 내용	<p>위원장 : 2018학년도 등록금회계의 전기이월자금은 152,000,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학년도 결산 시 등록금회계의 차기이월자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직접교육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잉여금 처리 원칙을 정하도록 함.</p> <p>전 체 : 등록금회계의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함.</p> <p>위원장 : 2017학년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2차 추경자금예산(안), 2018학년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(안),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(적립금) 개정에 따른 임의기타적립금 변경 및 적립금 용도변경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심의하고, 폐회를 선언함.</p>
----------	---

교직원위원		교직원위원		교직원위원		교직원위원	
김대학		박영봉		조극래		강경래	복감
학생위원		학생위원		학생위원		전문가위원	
김영준		안준용		김주형		조병진	불참
간사		간사					
박성수		박재완	